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19년 06월 28일

개정면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한**	한** 1973-09-15	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신발산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06-28